

## Contents

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항공 운항 감소



#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GE어플라이언스, 조지아주에 신규 물류 센터 개설
2. 유센로지스틱스,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의료기기 창고 개장
3. 코로나19 영향으로 1~2월 중국 항만 '컨' 물동량 10.6% 감소
4. 파나마운하, 코로나19 대응 예방조치 발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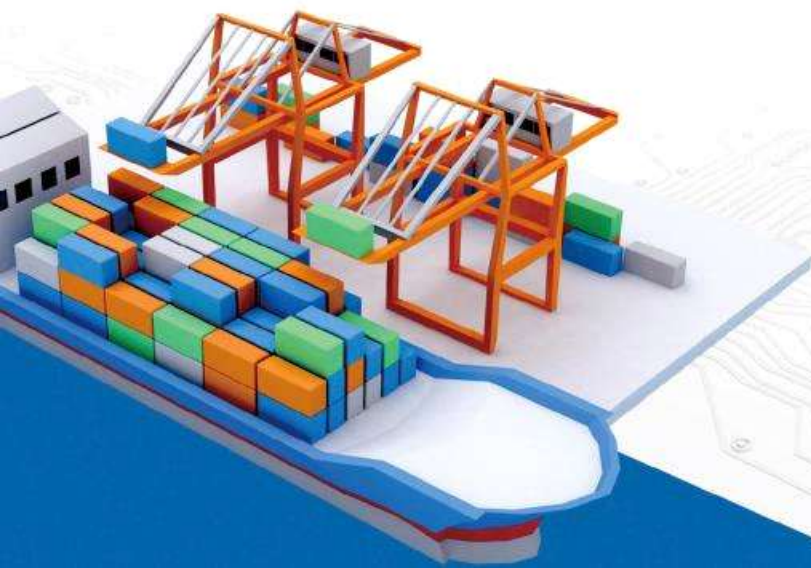
### 공지사항

-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

### 명사 스피치

“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 안정적으로 운영  
돼야 한다.”

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
(2020. 3. 23. /국제신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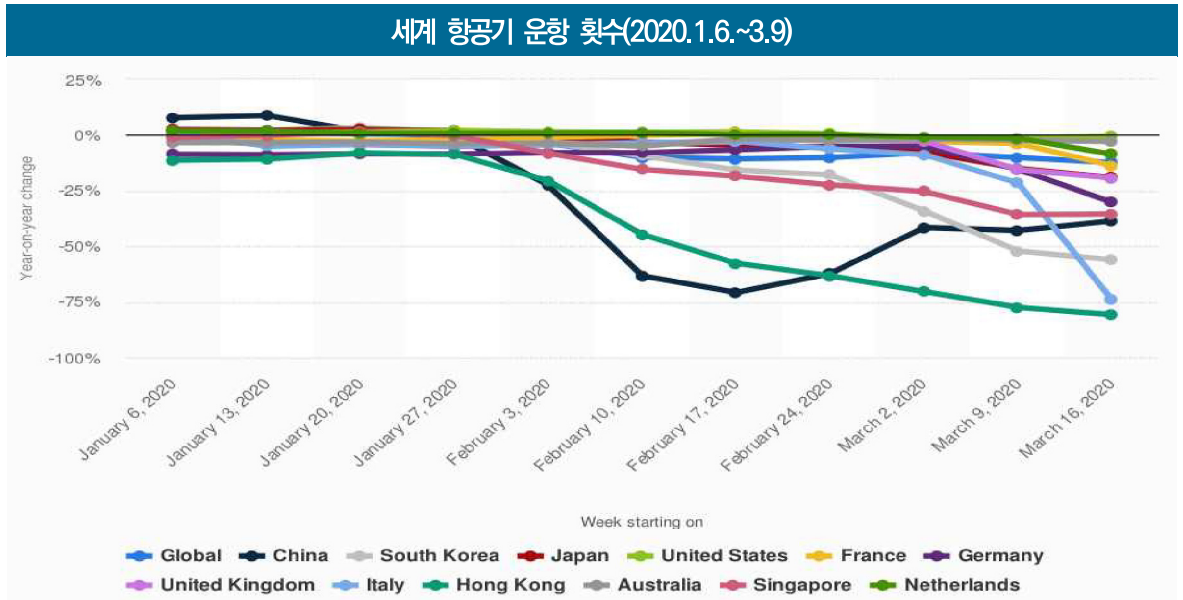

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#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항공 운항 감소

세계 항공기 운항 횟수(2020.1.6.~3.9)



자료: OAG Schedules Analyser

주: 비교 대상은 작년 동기임

- 세계적으로 항공 운항 수(예약)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'코로나-19') 영향으로 2019년 3월 3주차와 비교하여 12.4% 감소함
  - 중국발 항공은 코로나-19의 영향이 2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최대 70.8% 항공편이 감소되었으며, 3월 16일 기준 32.1%를 회복하였지만 2019년에 비해 38.7% 감소하였으며, 홍콩 발 항공은 80.8% 감소함
  - 아시아 주요지역은 1년 전보다 한국 56.1%, 싱가포르 35.5%, 일본 19.1% 감소함
  - 이탈리아는 코로나-19의 영향으로 3월 9일 대비 가장 큰 변화(52.3% 감소)를 보이고 있으며 3월 16일 기준 전년대비 73.9% 감소함
- 코로나-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 허브 공항들의 기능 마비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항 중지된 여객기의 운휴 노선 화물 수송 활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
  - 대한항공의 경우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여 지난 13일부터 베트남 호치민 노선에 여객기를 투입하여 한국 기업의 긴급 물량을 현지에 운송하고, 베트남 농산물을 한국으로 수송함

참고자료: <https://www.statista.com/>, "Weekly flights change of global airlines due to COVID-19 as of March 16, 2020", 2019.3.19. / <https://news.joins.com/>, "코로나에 쉬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화물기로... '조원태 아이디어'", 2020.03.15.

권보배 전문연구원

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

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## GE어플라이언스, 조지아주에 신규 물류 센터 개설

- GE어플라이언스는 전략적인 미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조지아주에 새로운 물류 센터를 개설함
  - GE어플라이언스는 미국 내 9개 주에서 시간당 2,300개 이상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음
  - 구매, 보관,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3,30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조지아주 사바나 향만의 애플레치아항 (ARP, Appalachian Regional Port) 인근에 남부물류센터를 개설함
- 남부물류센터는 주 정부, 향만국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개설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  - 남부물류센터는 애플레치아항 인근에 개설되는 최초의 물류센터이며, 개설을 위해 GE어플라이언스, 조지아주, 머레이 카운티, 조지아주 향만국 등이 파트너십을 체결함
  - 브라이언 캠프 총재는 GE어플라이언스가 3,300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남부물류센터를 개설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머레이 카운티와 조지아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- GE어플라이언스는 남부물류센터 개설에 따라 부품 및 자재 운송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
  - GE어플라이언스는 남부물류센터의 개설로 인해 300만 마일에 달하는 트럭 수송을 축소함으로써 부품 및 자재 운송 효율성이 30%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 - GE어플라이언스 공급망 부사장인 빌 쿤은 남부물류센터는 부품에 대한 리드타임을 줄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성을 가능케 하는 GE어플라이언스의 미래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함

GE어플라이언스 남부물류센터 전경

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gital.com>참고자료 : <https://www.supplychaindigital.com/> 2019.3.20.

안승현 전문연구원

051-797-4693, shan@kmi.re.kr

## 유센로지스틱스,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의료기기 창고 개장

- 유센로지스틱스는 2020년 2월 3일 상하이 FDA로부터 의료기기 창고 운영에 필요한 ‘의료기기 사업 허가서(Medical Device Business License)’를 정식 발급받았다고 발표함
  - 유센로지스틱스는 의료기기 보관 및 수송을 위한 3PL 자격을 획득한 바 있으며, 의료기기 창고 오픈을 위해 2019년 말 상하이 FDA의 초기 자격 심사를 통과, 2020년 1월 초에는 현장 심사를 받았음
- 이번에 개장한 의료기기 창고는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양산보세항구에 위치한 보세 시설로 총 5,000㎡의 이용 가능 면적에 랙과 선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
  - 동 창고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의료기기 제조 관행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창고로, 개별 온도조절 창고(10~30도) 3개로 구성되어 있음
  - 온도와 습도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 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,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창고관리(WMS) 시스템도 갖추고 있음
- 유센로지스틱스는 동 창고를 이용해 고객에게 도어-투-도어 통합물류, 토털 공급망 온도 제어, 통관, 실시간 가시성 제공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

### 상하이 양산보세항구 유센로지스틱스 의료기기 물류창고



■ 참고자료 : [www.yusen-logistics.com](http://www.yusen-logistics.com), 2020.3.19.

김은우 부연구위원

051-797-4680, [hisgrace@kmi.re.kr](mailto:hisgrace@kmi.re.kr)

## 코로나19 영향으로 1~2월 중국 항만 '컨' 물동량 10.6% 감소

- 중국 교통운수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~2월 중국 항만 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
  - 동 기간 중 중국 전체 항만이 처리한 화물량은 1억 8,700만 톤, 컨테이너 화물량은 3,448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.0%, 10.6% 감소했음
  - 전년 1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'코로나-19'로 약칭)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
- 2020년 1~2월 기간 중 중국 10대 항만의 화물 처리량(톤 기준)을 살펴보면, 상하이항이 전년 동기 대비(이하 동일) 가장 크게 감소한 14.8% 감소로 나타났다(순위도 4위로 하락)
  - 1위 항만인 닝보-저우산항은 1억 6,331만 톤을 처리하며 1.8% 감소에 그쳤음
  - 그 외 탕산항과 쑤저우항이 각각 10.1%, 11.9% 감소했음
  - 반면, 칭다오항, 르자오항, 텐진항, 다롄항은 각각 1.7%, 4.6%, 8.0%, 4.2% 증가했음
  - 동기간 중국 10대 항만의 화물 처리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
2020년 1~2월 중국 10대 항만의 화물 처리량

(단위 : 만 톤(R/T), %)

| 순위 | 항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물 처리량 |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닝보-저우산항 (Ningbo-Zhoushan port) | 16,331 | 1.8% 감소      |
| 2  | 탕산항 (Tangshan port)            | 9,619  | 10.1% 감소     |
| 3  | 칭다오항 (Qingdao port)            | 9,268  | 1.7% 증가      |
| 4  | 상하이항 (Shanghai port)           | 8,812  | 14.7% 감소     |
| 5  | 광저우항 (Guangzhou port)          | 8,223  | 6.6% 감소      |
| 6  | 르자오항 (Rizhao port)             | 7,897  | 4.6% 증가      |
| 7  | 쑤저우항* (Suzhou port)            | 7,463  | 11.9% 감소     |
| 8  | 텐진항 (Tianjin port)             | 7,208  | 8.0% 증가      |
| 9  | 옌타이항 (Yantai port)             | 6,149  | 1.8% 감소      |
| 10 | 다롄항 (Dalian port)              | 5,604  | 4.2% 증가      |

자료 : seatriade-maritime.com을 참고로 정리

주 : 쑤저우항은 내륙하천항

- 2020년 1~2월 기간 중 중국 10대 컨테이너 항만의 화물 처리량(TEU 기준)을 살펴보면, 상하이항이 590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(이하 동일) 10.7%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항만 실적이 크게 부진했음
  - 가장 크게 감소한 항만은 다롄항(24.0% 감소), 쑤저우항(23.9% 감소)임
  - 동기간 중국 10대 컨테이너 항만의 화물 처리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

## 2020년 1~2월 중국 10대 컨테이너 항만의 화물 처리량

(단위 : 천 TEU, %)

| 순위 | 항만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|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상하이항 (Shanghai port)           | 5,900       | 10.7% 감소     |
| 2  | 닝보-저우산항 (Ningbo-Zhoushan port) | 4,060       | 10.7% 감소     |
| 3  | 선전항 (Shenzhen port)            | 3,500       | 12.8% 감소     |
| 4  | 칭다오항 (Qingdao port)            | 3,170       | 1.4% 감소      |
| 5  | 광저우항 (Guangzhou port)          | 2,850       | 13.7% 감소     |
| 6  | 톈진항 (Tianjin port)             | 2,280       | 3.9% 감소      |
| 7  | 샤먼항 (Xiamen port)              | 1,560       | 8.0% 감소      |
| 8  | 다롄항 (Dalian port)              | 1,060       | 24.0% 감소     |
| 9  | 쑤저우항* (Suzhou port)            | 790         | 23.9% 감소     |
| 10 | 롄윈강항 (Lianyungang port)        | 770         | 2.2% 감소      |

자료 : seatriade-maritime.com을 참고로 정리

주 : 쑤저우항은 내륙하천항

- 코로나-19의 확산으로 2020년 들어 중국 항만은 심각한 물동량 감소 문제에 직면한 상황임
  - 중국 국내 상황은 코로나-19의 확산 및 재발 통제에 성공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, 산업 분야에서는 3월부터 공장의 재가동 및 생산 재개를 추진 중임
  - 그러나 코로나-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수출입 화물의 감염 문제 등 운송 분야의 새로운 위험 요인 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임

중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상하이항의 전경



자료 : <https://www.seatrade-maritime.com/> (검색일: 2020년 3월 23일)

■ 참고자료 : seatriade-maritime.com 2020.3.23.

한성일 부연구위원

051-797-4781, han@kmi.re.kr

## 파나마운하, 코로나19 대응 예방조치 발표

- 파나마운하 당국은 성명서를 통해 3월 19일 코로나19(COVID-19)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추가 조치들을 마련했다고 발표함
  - 파나마운하는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발병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마련함
  - 파나마운하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 도착 전 코로나19 발병 이력이 있는 국가를 30일 이내에 방문한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조치해왔음
  - 또한 파나마운하의 검사 및 통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국 내 보건 및 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- 전염성 위험에 대응한 검사는 지난 수년동안 수행해 왔으나,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들을 취함
  - 모든 선박은 코로나19가 발생한 항만에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승무원 변경 여부 및 시기 등을 파나마 보건부에 보고해야 함
  - 또한 파나마운하 검사요원은 탑승 전에 무전기로 선박과 연락을 취하여 탑승한 모든 승무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, 마스크와 알콜성 손 세정제는 상시 구비해놓도록 함
  - 더불어 보건부는 모든 선사로부터 코로나19 증상과 관계없이 질병과 관련된 유증상자를 보고하도록 요청 하였으며, 파나마운하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유지함
- 한편, 세계무역기구(WTO)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수출입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올해 1/3분기 무역량은 약 0.2%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

■ 참고자료 : seatrade-maritime.com, 2020.3.19

김영훈 연구원

051-797-4668, kyh@kmi.re.kr





## 공지사항

##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「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」을 시행 중에 있다.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「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」과 「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2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

## 2020년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

## 1. 신청 대상자

- ☐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☐ 재무적 투자자(「은행법」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
\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## 2. 대상 사업

- ☐ 국내 해운·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·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

## 〈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〉

| 구분    | 사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진출형 | 해외 <b>현지법인 설립</b> 등을 통해 <b>현지시장 물류사업</b>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하는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수합병형 | <b>현지 물류기업</b>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 업체 등) <b>인수·합병</b> 을 통해 <b>현지시장 물류사업</b>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하는 유형 |
| 시설투자형 | 해외 <b>항만·터미널·물류센터</b> 등 <b>물류시설 개발</b> 및 <b>운영권 확보</b> 등을 통해 <b>현지시장 물류사업</b> (해운, 3PL, 육운, 창고, 포워딩업 등) 진출하는 유형 |

### 3. 지원내용

□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·분석 지원

\*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·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(경제·기술·재무·법률 등 측면)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
□ (지원규모)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
○ (일반진출형)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
○ (인수합병형/시설투자형)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% 보조

## 〈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〉

| 구분    | 지원 비용   | 지원비율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일반진출형 | 최대 5천만원 | 조사비용의 50% |
| 인수합병형 | 최대 8천만원 | 조사비용의 50% |
| 시설투자형 |         |           |

□ (지원내용)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**용역비용**(계약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

\*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(예: 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인정되지 않음

## 2020년 화주-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

### 1. 신청대상자 :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

- **물류기업**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**화주기업** 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·유통·무역·건설·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  - \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  - \*\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“특수관계인”에 해당하거나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계열회사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### 2. 대상 사업

- **(개념)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,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,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·네트워크 확보,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

#### □ 대상사업 유형 예시

- ① **(동시진출형)*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·판로 확보,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,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,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
- ② **(화주주도형)**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**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**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,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
- ③ **(물류주도형)**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**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**과 협력하여 생산시설·판로 확보,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
- ④ **(현지협력형)** 현지에 진출한 화주·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·판로·물류거점 확대,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

### 3. 지원내용

- 화주·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·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  - (지원규모)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천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
    - \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
    - \*\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
  - (컨설팅 수행)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)이 직접수행\*을 원칙으로 하나,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
    - \*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·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. 단,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(예: 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



## 신청 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0. 2. 24(월) 09:00 ~ 2020. 4. 3(금) 18:00 까지

□ 제출서류

|  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방법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① | 신청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, 전자파일<br>함께 제출 | 양식 1 |
| ② | 사업제안서 10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류, 전자파일<br>함께 제출 | 양식 2 |
| ③ |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양식 3 |
| ④ |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⑤ |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<br>- 중소기업: 중소벤처기업부 발행<br>- 중견기업: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⑥ |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⑦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⑧ |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
※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,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

※ (가산점)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(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) 제출하여야 함

□ 접수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○ 주소 : (49111)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

해운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○ 제출방법 :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(전자파일 저장매체(USB) 동봉)

\* e-mail 접수 불가

## 선정 기준 및 방법

### □ 선정 기준

-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(100점 만점)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(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)

\*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,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
### □ 사업제안서 평가

- 일시 및 장소 :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
-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\*을 발표 (발표 20분, 질문·답변 10분)

\*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(e.g. PPT, PDF 등)로 발표 가능

### □ 선정결과 발표 :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

## 유의사항

- 신청서,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(붙임 참조)

- 선정 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·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
-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,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



- ☐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·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
- ☐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(051-797-4774, 051-797-4913)로 문의 바람